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 ○○○주택 근로자가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뇌좌상 및 두개골골절, 두피열창”으로 요양후 상병명 “감기로 인한 비인두염”을 재요양 신청한 경우

(88-32호 88. 2. 22.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성명 : 정 ○ ○

소속 : (주) ○○○주택개발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사건은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9. 1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택 국화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1984. 1. 24.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뇌좌상 및 두개골 골절(우측 후두골 손상)·두피열창, 외상성 신경성”으로 한림대학부속 한강성심병원(이하 “한강성심병원”이라 한다)에서 보험법에 의한 입원 가료를 받고 1984. 7. 10. 치료 종결되었으나, 그 이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85. 3. 28. 부터 1985. 6. 24. 까지 치료를 받은바 있고, 그후 또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감기로 인한 비인두염”으로 진단되어 원처분청이 1986. 1. 20. 자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제14급9호 등급의 장해급여를 받았으며 그후 청구인은 외상성 신경증상으로 1987. 6. 12부터 한강성심병원에서 자비로 외래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1987. 9. 9 이 증상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이 “간헐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내용 개선이 없는 상태이고, 사고에 대한 약물·면담 치료를 금일까지 받아왔으나 현재로서는 대중요법과 사회적응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됨”이고, 또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도 “기히 외상성 신경증으로 보

아 종결된 사람으로 외상성 신경증은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상종결할 것임”으로 되어 있어 두 소견이 모두 치료를 한다 하여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아니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2개의 치아가 파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치료종결한 각 부위가 계속 통증이 있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평생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심사청구결과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8. 1. 19. 정○○)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1. 28.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결정서(1987.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 박○○)
4. 요양신청서 사본(1987. 9. 9. 정○○)
5. 요양결의서 사본(1987. 9. 17.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6. 보험급여원부사본(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7. 소견서(1987. 9. 9. 한강성심병원 의사 한○○)
8. 소견서(1987. 10. 16. 상 등)

이상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이 사건의 사안을 심리하건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1984. 1. 24. 국화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은 후 상병명 “뇌좌상 및 두개골 골절, 외상후 신경증 및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서두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1, 2차의 요양을 받았고, 그후 장해 급여도 받은바

있으나 부상부위 등이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3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을 치료한 주치의 및 원처분청의 자문의가 똑같이 치료를 계속하여도 증상내용 개선의 기대가 없으므로 요양이 필요치 않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 청구인을 치료한 한강성심병원 주치의 한○○의 1987. 9. 9. 자 진단서 내용을 보면 “1984. 6. 2. 초진상 외상후 신경증으로 판명되어 그후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이 없고 더이상 치료적 의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1985. 6. 24. 치료종결코저 하였으나 불응하여 전원 요양, 그후 간헐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상내용 개선이 없는 상태이고 사고에 대한 분노가 커서 약물, 면담치료를 금일까지 받아 왔음. 현재로써는 대중요법과 사회 적응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됨”이라는 요지이고, 또 같은 의사의 1987. 10. 16. 자 소견서 내용을 보면 “병상일지상에서 검토 결과 입원당시 의식은 가면상태이고, 3일후 의식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뇌전산화 단층촬영소견은 뇌종창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그후 두피열창은 염증 소견이었으나 치유되었고, 1984. 3. 31. 신경외과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다가 두통, 안통, 전신통 등 두뇌 외상성 신경증 증상이 나타나 1987. 6. 12. 부터 신경정신과 외래치료를 1987. 10. 16. 까지 하고 있는 환자임”으로 되어 있고, 원처분청의 요양결정 결의서상의 자문의 소견에는 “기히 외상성 신경증으로 보상종결된 사람으로 외상성 신경증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보상 종결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각각 확인하였는바, 이상 세(3) 의학적 소견이 모두 청구인이 계속 치료를 받는다 하여도 더이상 증상이 호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치료 계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요양은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법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상사(주) 근로자가 원단운반작업 중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경우

(88-69호 88. 4. 18. 기각)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청평3리

성명: 장 ○ ○

소속: ○○○상사(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11. 25.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상사(주) 소속 근로자로서 1987. 8. 12. 회사 현관에서 원단을 재단실로 옮기는 도중 재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원단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리로 지지하려고 하다 힘에 겨워 주저앉아 발생한 재해로서 상병명 “제 5요추 척추 분리증”으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강동성심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은 “제 5요추 척추분리증(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척추분리증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압박골절 전위 등을 동반한 경우라면 해당되나, 좌상으로 척추분리증 증상이 있는 것이라면 요부좌상으로 진단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임이며 따라서 동 상병은 선천적 증상으로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이 아니며 재해 내용이 현격한 외부충격을 동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통상작업이 원단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을 감안할때 이는 뚜렷한 외상의 증거가 없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한양대학 부속병원진단서(1988. 3. 2. 발행)를 첨부하여 업무상 재해하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청구인은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2. 9. 장○○)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3.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87. 12. 29. 심사관 오○○)
4. 소견서 사본(1987. 11. 13. 강동성심병원 의사 이○○)
5. 소견서 사본(1987. 자문의사 남○○)
6. 의학감정서(1987. 12. 22. 한강성심병원 의사 길○○)
7. 진단서(1988. 3. 2. 한양대학부속병원 의사 김○○)
8. 기 타

위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상사(주) 소속 근로자로서 1987. 8.

12. 작업중 회사 현관에서 원단을 재단실로 옮기는 도중 재단실 계단에서 원단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리로 이를 지지하려고 하다 힘에 겨워 주저 앉아 발생한 재해로서 상병명 “제 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강동성심병원담당주치의 소견이 “제5요추 척추분리증(외상에 의해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척추 분리증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압박골절, 전위 등을 동반한 경우라면 해당되나, 좌상으로 척추 분리증 증상이 있는 것이라면 요부 좌상으로 진단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이고 따라서 원처분청은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동 상병은 선천적 증상으로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이 아니며 재해내용이 현격한 외부 충격을 동반한 것이 아니고 원단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뚜렷한 외상의 증거가 없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 현관에서 원단을 재단실로 옮기는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또한 한양대학부속병원 진단서상 상병명 “제 4-5요추 및 제 5요추 제1척추간 수핵탈출증”임으로 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3개 의료기관의 소견이 각각 다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 제3의료기관(한강성심병원)에 의학적 감정을 의뢰한 바 그 소견이 “척추 분리증은 추궁의 상하관절 돌기간의 협부가 이단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본 분리증은 전 인구의 5% 전후에서 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임상증상을 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되기 쉬운 것이다. 본 분리증이 동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 추궁부에 이상 가동성으로 2차적 변화로 동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분리증의 발생원인은 불명이며, 선천성, 후천성 발생설이 있고 후천성은 관절돌기간부에 배근긴장, 요추의 만곡 등에 의한 역학적 부담이 가해져 그 부위에 골개변 또는 잠행성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임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소견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단 운반 과정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또한 상병명이 “척추분리증”으로 재해내용이 현격한 외부충격을 동반한 것이 아니고 뚜렷한 외상의 증거가 희박하며 청구인의 척추분리증의 발생원인은 불명이며 의학적으로도 이를 증명할만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양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상 “제 4-5요추 및 제 5요추 제 1척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 당시의 상병명과 상이하므로 본 상병이 의학적으로 언제 발병하였는지도 사실상 불명확하다.

이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그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만한 이유가 없다.